

의안번호	2210860
의 퇴 인	서미화 의원
회 답 일	2025. 8. 20.
추계번호	25C318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7억 900만원, 2030년 42억 6,4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99억 200만원(연평균 39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 이는 현행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 시행 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69조의3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3,709	3,840	3,975	4,116	4,264	19,902	3,980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9조의3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 하고 독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이하 “동료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1.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간 상담 및 지원 등 2. 보건·의료, 일상생활 등 제반 영역에서의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및 옹호 3. 보건·의료, 일상생활 등 제반 영역에서의 정신질환자의 독립적 생활 지원 및 조력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 그 밖에 동료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9조의3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	○ 기시행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서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 개소 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추계는 17개 시도에 센터를 1개소씩 설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
-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17개 시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휴 공간에 설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건축비, 임차료, 기물구입비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인건비)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인건비를 준용하여 동료지원센터 1개소 당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 동료지원가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1인당 인건비는 2025년 기준 연간 36,217,000원을 기준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

[표 2]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인건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인건비	1개소	188	195	203	210	218	1,014	203
	전국	3,197	3,318	3,443	3,573	3,710	17,240	3,448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운영비) 서울시의 유사사례에 따라 2025년 기준 운영비는 직원 1인당 590만원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운영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운영비	1개소	30	31	31	32	33	157	31
	전국	512	522	532	543	554	2,662	532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 결과, 전국에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17개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199억 2,000만원(연평균 39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동료지원센터 인건비	3,197	3,318	3,443	3,573	3,710	17,240	3,448
동료지원센터 운영비	512	522	532	543	554	2,662	532
합계	3,709	3,840	3,975	4,116	4,264	19,902	3,980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에서 추계한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액은 현행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 시행 시 하위법령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박선아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741	sunapark@assembly.go.kr